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당초 ‘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’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하였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, 최근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여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‘가상자산 관련 업종’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

- 1)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 시행(’24.7월)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·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, 예전과 같이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
- 2) 기존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열거된 업종 중 ‘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’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도록 함

3) 혁신성·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게 되고 기존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 업종란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란을 삭제한다.

별표 1 제5호 및 제6호 업종란을 각각 제4호 및 제5호 업종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]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(제2조의4 관련)		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]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(제2조의4 관련)	
업종	분류코드	업종	분류코드
1. ~ 3. (생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
4. <u>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</u>	<u>63999-1</u>	4. <삭제>	
5. <u>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</u>	<u>91249</u>	4. <u>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</u>	<u>91249</u>
6. <u>무도장 운영업</u>	<u>91291</u>	5. <u>무도장 운영업</u>	<u>91291</u>
비고: (생략)		비고: (현행과 같음)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708